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7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권칠승·조인철·소병훈

김태선 · 김준형 · 임호선

송옥주·문금주·이기헌

이병진 · 홍기원 · 김준혁

위성곤 · 강득구 · 강준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소비세액을 3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는 자 너 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 항제3호).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중 "아니한다) 3명"를 "아니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명"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제18조(조건부면세)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	
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	
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	
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	
로 하여 면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	3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	바
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u>아니한다) 3명</u>	<u>아니한다. 이하</u>

<u>이상</u>을 양육하는 사람이 <u>이 항에서 같다) 2명</u>-----구입하는 것

<u><신 설></u>

<u>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u> 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 입하는 것

4. ~ 13. (생략)

4. ~ 1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